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3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3월 10일

나. 발 의 자: 임헌호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2월 11일

다. 회부일자: 2025년 3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3. 24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임헌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원내용 중 보건소 진료비 신설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지원사항 중 보건소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6조(지원)는 이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‘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- 검토 결과
 - 본 조례는 대대로 국방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(2018.11.08.)되었으며, 이에 따라 ▲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▲체육시설 사용료 ▲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고 있음.
 - 한편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‘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’을 추가로 감면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.
 - 서울시 타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24개 자치구 중 18개(75%)의 자치구에서 병역명문가의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음.
 - 영등포구에는 약 191가문(950명)의 병역명문가가 거주하고 있으며, 영등포구에서는 사용료 등 감면사항 외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, 타 서울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 - 또한,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이용료 등 감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병역명문가들이 지원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,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헌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97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3. .

발 의 자: 임헌호, 정선희, 유승용
이성수, 남완현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에 따라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및 구에서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내용 중 보건소 진료비 신설(안 제6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.

1. 구가 설치·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
2.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
3.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
4.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원) ① <u>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구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</u>	제6조(지원) ① <u>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.</u> 1. <u>구가 설치·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</u> 2. <u>구가 설치·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</u> 3. <u>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</u> 4. <u>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